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과 탄소중립 관련 재정 정책의 검토·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00. ~ 2022.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성과관리 등의 사항**”을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을 “**협의·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고용환경 예산과**”를 “**고용예산과**”로, “**문화예산과**”를 “**문화예산과·기후환경예산과**”로, “**연금보건의예산과**”를 “**연금보건의예산과·지역예산과**”로, “**행정예산과·지역예산과**”를 “**행정예산과**”로, “**두되**”를 “**두며**”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환경예산과장**”을 “**고용예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고용 및 환경분야**”를 각각 “**고용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노동부·환경부 및 기상청소관**”을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노동부·환경부소관**”을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용 및 환경분야**”를 “**고용 분야**”로 한다.

제10조제29항 및 제30항을 각각 제30항 및 제3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를 각각 제27항부터 제

2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9항(종전의 제27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제외한다)·통계청”을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㉞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조정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조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제10조제17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3.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 지예산제도의 운영

제13조의3제2항 중 “**사회적경제과 및 협동조합과를 두되**”를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4.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5.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6.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7.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 중 총계 “1,072”를 “1,079”로 하고, 일반직 계 “1,062”를 “1,069”로 하며, 서기관 “69”를 “7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8”을 “89”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4”를 “76”으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4”를 “2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73”을 “1,0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63”을 “1,070”으로 하며, 서기관 “69”를 “7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8”을 “89”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

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5”를 “77”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4”를 “26”으로 한다.

별표 4에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산실 기후환경예산과	2명 (4급 1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11) 장기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산실) ① ~ ⑤ (생 략)	제10조(예산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 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 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 운용계획의 협의·조정 및 <u>성과 관리 등의 사항</u> 에 관하여 실장 을 보좌한다.	⑥ ----- ----- ----- ----- <u>성과 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 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u> -----.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 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 계획의 <u>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 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u>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 ----- ----- <u>협의·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u> ----- ----- ----- -----.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 정책과·예산기준과·기금운용 계획과·예산관리과· <u>고용환경 예산과·교육예산과·문화예산 과·총사업비관리과·국토교통 예산과·산업중소벤처예산과·</u>	⑧ ----- ----- ----- <u>고용예산 과</u> ----- <u>문화예산 과·기후환경예산과</u> ----- -----

농림해양예산과 · 연구개발예산과 · 정보통신예산과 · 복지예산과 · 연금보건의료예산과 · 안전예산과 · 법사예산과 · 행정예산과 · 지역예산과 · 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 ⑬ (생략)

⑭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 기금과 관련된 고용 및 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생략)
3. 예산 · 기금과 관련된 고용 및 환경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 · 조정
4. 고용노동부 ·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고용노동부 · 환경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 · 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연금보건의료예산과 · 지역예산과-----행정예산과-----

----- 두며-----

-----.

⑨ ~ ⑬ (현행과 같음)

⑭ 고용예산과장-----
-----.

1. ----- 고용 분야 -----

2. (현행과 같음)
3. ----- 고용 분야 -----

4.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

5. 고용노동부 소관 -----

6. (생략)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및 환경분야의 사업 및 일차
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⑮·⑯ (생략)

<신설>

6. (현행과 같음)

7. ----- 고용
분야-----

⑮·⑯ (현행과 같음)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3.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
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
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
리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
금 관련 협의·조정과 온실가

①⑦ ~ ②④ (생략)

<신설>

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①⑧ ~ ②⑤ (현행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와 같음)

②⑥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 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조정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조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㉔ · ㉕ (생략)

㉖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외교부 · 통일부 · 행정안전부(재난 · 안전 분야를 제외한다) ·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 9. (생략)

㉗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예산 · 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 · 조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 · 조정

㉘ · ㉙ (현행 제25항 및 제26항과 같음)

㉚ -----
-----.

1. · 2. (현행과 같음)

3. -----

행정안전부(재난 · 안전 분야

를 제외한다) -----

4. ~ 9. (현행과 같음)

<삭제>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
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의 종합·조정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
정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
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
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
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조
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
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㉔ · ㉕ (생략)

제13조의3(장기전략국) ① (생략)

② 장기전략국에 미래전략과 ·
사회적경제과 및 협동조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 ⑤ (생략)

<신설>

㉖ · ㉗ (현행 제29항 및 제30항
과 같음)

제13조의3(장기전략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사회적경제과 · 협동조합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
안의 협의·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
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4.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의 발굴·검토

5.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6.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 계획의 수립·변경
7.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72</u>	<u>1,079</u>	+7
·	·	·	
·	·	·	
일반직 계	<u>1,062</u>	<u>1,069</u>	+7
·	·	·	
·	·	·	
서기관	<u>69</u>	<u>71</u>	+2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88</u>	<u>89</u>	+1
·	·	·	
·	·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	<u>74</u>	<u>76</u>	+2
·	·	·	
·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24</u>	<u>26</u>	+2
·	·	·	
·	·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73</u>	<u>1,080</u>	+7
·	·	·	
·	·	·	
일반직 계	<u>1,063</u>	<u>1,070</u>	+7
·	·	·	
·	·	·	
서기관	<u>69</u>	<u>71</u>	+2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88</u>	<u>89</u>	+1
·	·	·	
·	·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	<u>75</u>	<u>77</u>	+2
·	·	·	
·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24</u>	<u>26</u>	+2
·	·	·	
·	·	·	